국토교통부 / 공정거래위원회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일시	2021. 7. 8.(목) / 총 23매(본문5, 참고2, 별첨16)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배성, 사무관 백병성, 주무관 고재훈 ·☎ (044) 201-3993, 3996, 4000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	담 당 자	·과장 이상협, 사무관 유형주 ·☎ (044) 200-4886, 4889
보 도 일 시		2021년 7월 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8.(목) 15:00 이후 보도 가능	

정부-업계 맞손,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 힘 모은다

- 국토부·공정위·5개 기업집단 등 상생협약식··공정거래 문화 확산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7월 8일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대표하여 5개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CJ)에서 참여한 가운데,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 이번 행사에서는 물류시장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물류시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민·관이 함께 실천 의지를 다졌다.

■ 협약식은 ① **물류시장 관련정책 공조**를 위한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간 **업무협약(MOU)** ② 물류시장에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실천을 선언**하는 **민·관 공동 상생협약 순서로** 진행되었다.

○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업하기로 한 것은 큰 의의**가 있고,

○ 국내 화주·물류기업 대표로 **5개 대기업집단에서 동참**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물류시장에 **상생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자율규범 마련 추진 배경

□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대기업집단 물류기업 내부거래 비중 : ('16) 43.6%, ('17) 41.9% ('18) 37.7% / 全산업 12%

○ 이러한 관행은 물류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제약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한편,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 물류기업의 계약단계별 애로사항 : (계약단계) 불합리한 단가 인하(47.5%), (이행단계) 비용없이 서비스 요구(65.6%), (정산단계) 대금지급 지연(51.5%)

○ 물류 계약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 등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생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자율규범 마련**을 추진하였다.

○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통해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 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사항** 등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 공정위가 마련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함에 있어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의 경우 자체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회사와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2 주요 행사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2021년 7월 8일(목),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 2021년 7월 8일(목) 15:00, 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소재)

▸ **주요 내용**
- (1부) 국토부-공정위 업무 협약식(MOU)
- (2부) 국토부-공정위-화주·물류업계 공동 상생 협약식

▸ **주요 참석자**
- (정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업계)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 (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CJ)
- (단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

화주기업 (5개사)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 ▲현대자동차 윤여철 부회장, ▲엘지전자㈜ 배두용 대표, ▲롯데쇼핑㈜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 ▲씨제이제일제당㈜ 최은석 대표
물류기업 (5개사)	▲삼성전자로지텍㈜ 최윤범 대표, ▲현대글로비스㈜ 김정훈 대표, ▲㈜LX판토스 최원혁 대표, ▲롯데글로벌로지스㈜ 박찬복 대표, ▲씨제이대한통운㈜ 강신호 대표

※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진행
[참석자 최소화, 전원 마스크 착용, 좌석별 가림판 설치, 발열체크 등]

□ 먼저 "**공정과 상생의 가치에 기반한 물류생태계 조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국토부·공정위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류시장 정보 공유 ▲제도수립 및 개선 협의 ▲소관법령 자문 ▲공동조사·연구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 이어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10개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약식**이 **진행**되었다.

○ 참석자들은 공정거래를 위해 마련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 기준**」,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업계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동참 의지를 다지며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 붙임2. 물류거래 환경개선 및 상생협력 실천 선언문 참조

□ 이 자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가격경쟁** 중심의 **서비스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보급·확산되어 "**불필요한 분쟁·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동참을 당부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류산업 특유의 역동성과 활력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쟁 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우리 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백신"**과도 같다고 언급하며, 물류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이 자율준수기준의 취지와 내용을 **기업 경영에 "접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대기업집단 화주·물류기업 대표들도 이번 **상생협약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정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행사는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위가 함께 **물류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특히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가 동참**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물류시장 내 **상생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 문화가 자리 잡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국토부와 공정위는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으며,

○ 또한 일감개방 및 표준계약서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공정위), **우수물류기업 인증평가**(국토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자율규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백병성 사무관(☎ 044-201-399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협약식 행사 개요

□ (개최목적)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및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등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규범을 시장에 확산**시키고, **대표적 화주·물류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 **일시·장소 : '21. 7. 8.(목) 15:00 ~ 16:15** / 대한상의 1층 EC룸(서울 중구)

□ **주요 참석자** (총 16명)

○ **(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관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장**, 기업집단국장

○ **(업 계)**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 (5개집단, 10개社)

* (화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엘지전자, 롯데쇼핑, 씨제이제일제당
* (물류) 삼성전자로지텍, 현대글로비스, LX판토스, 롯데글로벌로지스, 씨제이대한통운

○ **(단 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

□ **주요 내용**

① **(1부)** 물류시장 정책 공조를 위한 **국토부·공정위 업무협약식**

② **(2부)** 자율규범 확산을 위한 **국토부·공정위·업계 상생협약식**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비고
1부 **국토부·공정위 업무협약식** (15:00~15:20)	15:00~15:03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5:03~15:10	인사말씀	국토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15:10~15:15	업무협약 서명식	
	15:15~15:20	기념촬영	
2부 **물류거래 환경 개선 협약식** (15:20~16:15)	15:20~15:25	협약 선언문 낭독 및 서명식	참석자 전원
	15:25~15:30	기념촬영	
	15:30~15:35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소개	공정위(부당지원감시과)
	15:35~15:40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소개	국토부(물류정책과)
	15:40~16:10	간담회(자유토론 및 의견개진)	참석자 전원
	16:10~16:15	마무리 말씀	국토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16:15	폐회	

참고2 **물류거래 환경개선 및 상생협력 실천 선언문**

물류거래 환경개선 및 상생협력 실천 선언문

2021. 7. 8.

화주·물류업계(이하 '양 업계'),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상생 협력을 위해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1. 양 업계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전략적 협력자로 인식하고, 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2. 양 업계는 물류 업무를 위·수탁함에 있어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3. 양 업계는 물류 계약시 운임, 대금 지급, 책임 및 권한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담아 서면화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4. 화주업계는 합리적인 거래상대방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장기 계약 확대 등 물류업계의 경영 안정성을 위해 노력한다.

5. 물류업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화주업계와 계약이행에 만전을 다하고 물류서비스 혁신 역량을 제고하며, 협력회사와의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한다.

6.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류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양 업계간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 발굴, 제도 개선 등 노력을 지속한다.

별첨1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Ⅰ. 일반사항

1. 목적 및 유의사항

가. 이 기준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물류거래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좁게는 해당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물류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넓게는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글로벌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나. 이 기준의 주된 내용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에게 물류 일감 개방을 위한 바람직한 거래방법과 그 기준 및 내부통제 방법 등을 제시하고, 해당 회사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은 물류거래 관련 내부지침이나 교육 자료를 마련할 때, 이 기준의 목적과 기본원칙 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라. 물류 일감개방 문화가 해당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 정착되고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해당 대규모 기업집단의 회장, 경영진, 이사회 구성원 등 기업집단 내 최고 의사결정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마. 대규모 기업집단 내 최고 의사결정자들은 물류시장에서의 모범적인 거래문화 정착에 앞장섬과 동시에 해당 기업집단 내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물류거래가 실제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바. 이 기준은 대규모 기업집단 내부에서의 물류거래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같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아니지만 총수일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까지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를 말한다.

나.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 H4910(철도 여객 운송업 제외), H4930, H4940, H4950, H5210, H5291, H5294, H5299

다. “물류기업”이란 화주(貨主)기업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라. “물류 용역위탁”이란 물류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류활동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경쟁입찰”이란 발주기업이 다수의 입찰자를 참여시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입찰방식을 말하며, ① 입찰내용과 입찰자의 자격 등을 널리 공지하여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일반경쟁입찰, ② 입찰자의 자격을 사전에 제한하여 실시하는 제한경쟁입찰, ③ 다수의 입찰자를 사전에 지명하여 실시하는 지명경쟁입찰 등으로 구분된다.

바.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발주기업이 임의로 거래상대방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 “협력회사”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물류기업으로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으로부터 물류 용역위탁을 받은 회사를 말한다.

Ⅱ. 기본원칙

1. 절차적 정당성 보장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화주기업은 물류일감을 발주함에 있어, 단지 자신의 계열회사라는 이유로 거래상대방을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함으로써, 물류일감이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물류기업에도 공정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제3자 물류 확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화주기업은 발주 목적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량 있고 성장 잠재력이 큰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물류일감이 더욱 나누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거래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화주기업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하여 발주목적에 적합한 거래상대방을 탐색함으로써 거래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은 지속적인 투자와 과감한 혁신을 통하여 전문 물류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한다.

4.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물류거래에서 계열 물류회사와 독립 물류회사 간에 거래조건의 차등을 두거나 협력회사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거래함으로써 물류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선도한다.

5. 거래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물류일감을 발주하거나 물류업무를 용역 위탁함에 있어, 해당 거래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함으로써, 거래상대방 선정 및 세부 거래조건 결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Ⅲ. 화주기업의 자율준수 세부기준

1. 물류일감 발주 시 검토사항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화주기업은 다음의 단계별 고려요소를 참고하는 등 체계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물류일감을 발주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가. 먼저, 발주목적을 확인한다. 계획수립을 비롯한 물류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차원의 발주인지, 아니면 운송·보관·하역과 같은 단순 실행업무 차원의 발주인지 등을 검토한다. 또, 발주의 목적·성격, 시장상황, 거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통합발주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결정한다.

나. 다음으로, 발주하려는 물류업무와 관련된 시장의 일반적인 거래구조, 시장규모, 수행 가능한 기업의 수 등 해당시장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살펴본다.

다. 그리고 위 발주목적과 시장상황 등에 맞게 거래상대방 선정방식을 결정한다. 이 때 가급적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만일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한다.

< 거래상대방 선정방식 결정기준 >

1) (일반경쟁입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진행되는 물류업무에 대한 발주로서 일반적·통상적인 기술이 요구되어 수행 가능한 물류기업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

2) (제한경쟁입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진행되는 물류업무에 대한 발주로서 지역적·기술적으로 특수한 요건이 필요하여 불특정 다수의 물류기업이 수행하기는 어려우나, 수행 가능한 물류기업의 명단이 명확히 특정되지는 아니하는 경우

3) (지명경쟁입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진행되는 물류업무에 대한 발주로서 지역적·기술적으로 특수한 요건이 필요하여 수행 가능한 물류기업 명단이 특정되는 경우

4)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수행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특정 (계열)물류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지역적·기술적으로 특수한 요건이 필요하여 수행할 수 있는 물류기업이 유일하거나, 특정 (계열)물류기업에게 발주하지 않을 시 중대한 보안상 문제의 발생 또는 명백한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라. 거래상대방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발주목적 적합성, 가격, 서비스 품질, 안정성, 전문성, 보안성, 인프라, 성장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여 마련하되,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시키는 행위는 지양한다.

마. 거래상대방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에는 계열회사인지 여부로 입찰 참여 기업들을 차별 취급하지 아니하고, 거래조건 면에서도 계열회사 여부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아니한다. 또한, 합목적적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 계약을 적극 고려한다.

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한다.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계약서에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와 조치사항, 대금지급·운송요율 및 손해배상 기준과 관련된 사항, 유가변동 등에 따른 서비스 요율의 조정 관련 사항 등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은 가급적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2. 계열 물류기업과의 계약갱신 시 검토사항

계열 물류기업에게 발주한 기존 물류계약의 종기가 도래하여 새로운 계약이 필요할 경우에도 위 1.과 같은 검토과정을 거치는데, 가급적이면 계약갱신 보다는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한다. 만약 계열 물류기업과의 계약갱신을 추진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갱신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적극 고려한다.

가. 먼저, 계열 물류기업과의 거래가 시작된 시기와 거래경위, 관련 계약상황과 계약내용의 이행정도 및 수준 평가 등 거래와 관련된 기초사실을 파악한다.

나. 다음으로, 계열 물류기업에 발주한 물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구조와 해당 물류업무가 실제 수행된 거래구조 등을 확인한다.

다. 위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음의 고려사항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검토한다.

< 계열 물류기업과의 계약갱신 시 고려사항 >

1) 계열 물류기업에 발주한 물류업무 중 다른 물류기업에 다시 위탁되어 운송·보관·하역 등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관련 물류업무 수행과정에서 계열 물류기업이 실제로 행한 구체적인 역할과 그 역할에 대하여 지급된 대가의 적정성 여부

2) 해당 물류거래에서 계열 물류기업이 수행한 업무가 보안상의 필요나 기술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물류기업으로의 대체가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3) 계열 물류기업에게 위탁한 물류업무를 다른 독립·전문 물류기업이나 해당 계열 물류기업으로부터 다시 위탁받아 수행한 물류기업이 (해당 계열 물류기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행할 경우 예상되는 가격·품질·안정성 등에서의 이익 및 손실

라. 위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계열 물류기업이 물류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역할에 따른 대가가 과도하지 않으며, 계열 물류기업이 수행한 업무의 특성상 객관적으로 대체하기 어렵거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거래상대방 변경 시 편익보다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계열 물류기업과의 계약갱신을 고려할 수 있다.

마.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면 다른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 거래나 경쟁입찰을 통한 일감개방 추진을 적극 고려한다.

3.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용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화주기업은 물류거래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물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한다.

가. 물류일감 발주부서의 업무절차와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내부 발주지침을 마련한다. 내부 발주지침은 이 자율준수기준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참조하여 발주부서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나. 물류일감 발주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조직을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 이 경우 해당 심의조직은 새로 만들거나 특정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별도의 상시조직으로 운영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내부거래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발주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발주업무 관련 담당 임·직원과 협조부서 등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를 통하여 관련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 물류일감 발주업무 심의조직의 구성과 역할 >

1) 심의조직은 물류일감 발주업무 담당임원 포함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 등 외부 인사를 포함시킨다.

2) 심의조직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정기적으로(최소 연 1회 이상) 물류업무 발주지침의 적절성, 발주부서의 발주지침 준수 여부, 진행 또는 종료된 업무의 일감개방 및 공정거래 준수정도 등을 심의한다.

② 발주부서에서 일정 거래금액 이상의 물류업무를 신규발주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심의조직은 최종 계약 체결에 앞서 내부 발주지침의 준수 여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조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거래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심의한다.

3) 심의결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거래 및 향후 발주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Ⅳ. 물류기업의 자율준수 세부기준

1. 전문 물류기업으로서의 역량 강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전문 물류기업으로서의 역량 강화 및 국제물류 시장에서의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계열 화주기업으로부터 물류일감을 일괄적으로 수주한 후 이를 협력회사에 단순 용역 위탁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은 수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거래단계만 추가하는 행태는 지양한다.

나. 물류전문 인력의 육성 및 고용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할 경우 첨단 물류시설, 장비, 운송수단, 해외인프라 등 물류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회사의 실질적인 물류활동 수행역량을 증진한다.

다. 첨단 운송체계, 클라우드 컴퓨팅, 무선주파수 인식 등 물류 관련 신기술의 연구와 환경 친화적 녹색물류를 위한 기술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혁신을 바탕으로 한 물류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한다.

라. 제3자 물류거래 비중을 높이고 국제물류 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아니하는 한편, 적절한 정보시스템 및 매뉴얼 마련 등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에서 제시하는 각종 심사항목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마.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이 자체 구축한 물류시스템 및 그 운용성과, 해외시장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물류기업의 성공요인과 최신 경영기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물류업무 개선을 통해, 국제물류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물류 시장의 발전과 혁신을 주도한다.

2.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독립·전문 물류기업과 함께 상생하는 물류거래 문화를 선도한다.

가. 계열 화주기업으로부터 수주한 물량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지위를 활용하여 협력회사에게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및 운임 변경, 무리한 과적이나 긴급 수송 요구 등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나. 직접운송비율의 준수 및 적재물보상보험가입 등 물류관련법상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그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다. 협력회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개선, 금융(자금) 지원, 기술 지원,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의 적극적 조정 등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천한다.

라. 협력회사와 계약기간, 운송요율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설정할 때는 상대방이 계열회사인지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화주기업과 체결한 수탁계약 조건, 시장의 통상적 거래조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한다.

마. 협력회사와 계약할 때는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화물취급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화물위탁증이나 창고증권의 발행, 부당한 위탁취소 및 감액금지, 서비스 요율의 조정신청 관련 사항 등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미리 사전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가급적 계약서에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바. 협력회사와의 거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을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사. 이 경우 해당 심의조직은 새로 만들거나 특정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별도의 상시조직으로 운영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한 심의기구 등이 운영되고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물류 용역위탁 거래 관련 담당 임·직원과 협조부서 등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를 통하여 관련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 협력회사와의 거래 적정성 심의조직의 구성과 역할 >

1) 심의조직은 협력회사 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 등 외부 인사를 포함시킨다.

2) 심의조직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협력회사 등록·선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 절차의 적절성, 계약부서의 협력회사 등록·선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 진행 또는 종료된 계약의 공정거래 준수정도 등을 심의한다.

② 수주한 물량을 협력회사에 다시 위탁하고자 할 경우, 심의조직은 최종 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 절차의 준수 여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조건의 적절성, 계약 과정 및 내용이 상생협력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전반적으로 계약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지 검토한다.

③ 협력회사와의 거래 도중에 계약내용에 대한 견해 차이, 계약의 일방적 불이행·변경, 단가인하 및 과적·금전 제공 강요, 계약단가 조정 등의 문제로 발주부서와 협력회사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심의조직은 발주부서와 협력회사 각각에게 의견서를 제출받아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분쟁 조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④ 협력회사와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는 하도급대금의 기일 내 지급 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의 지급 여부, 화주기업과의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을 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실제 거래가 관련 법령, 계약 내용 및 상생협력과 부합되게 이행되었는지 점검한다.

3) 심의결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거래 및 향후 협력회사와의 거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별첨2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화주기업 ○○○○회사(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와 물류기업 ○○○○회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탁한 물류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제4조에서 정하는 범위에 대해 '물류서비스'를 위탁하고 수급인이 이를 수탁 처리함에 있어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와 첨부된 '부속합의서'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 상호 합의하여 부속합의서를 추가할 수 있다.

제3조(목적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탁하는 목적물은 도급인이 지정하는 물품 및 물품의 보관용기(이하 '화물'이라 함)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물류서비스의 범위)
① 본 계약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물류서비스(이하 '서비스'라 칭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의 화물에 대한 운송, 보관, 하역, 통관, 설치 및 이와 관련한 업무
2. 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물류시설 제공 및 관리
3. 물류 관리 용역
4.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5. 물류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서비스 범위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서비스 요율)
① 제4조의 서비스에 대한 제반 요율은 '부속합의서'상의 '요율표'에 의거한다.
② 물류컨설팅 비용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협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제6조(비용의 정산)

① 제5조에 명시된 요율에 의거한 서비스 수수료는 월 단위로 하며, 수급인은 당월 분의 비용을 익월 10일 영업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도급인에게 청구하고 도급인은 익월 말 이전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② 수급인은 화물 인도 시 도급인이 지정한 수취인의 서명이 날인된 인수증 및 운송증빙서류 일체를 수취 및 보관하되, 도급인이 요청할 경우 도급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인수증 미회수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단, 도급인 또는 도급인이 지정한 수취인의 귀책으로 인수증 및 운송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인수증 및 운송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인은 해당 운송비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단, 도급인 또는 도급인이 지정한 수취인의 귀책으로 인수증 및 운송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7조(의무 및 책임)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도급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화물을 인수하여 도급인이 지정한 최종 목적지에서 화물이 인도될 때까지 화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화물을 인수할 때 외관상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 당시 상호 확인되지 않은 화물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외관상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수급인은 대상 화물의 손상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숙련된 기사 및 작업자를 사용하고, 도급인의 주의사항, 출하지 또는 도착지에서의 각 사업자들이 지시하는 사항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⑤ 수급인은 운송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수급인의 사용인 및 기타 제3자의 사망, 상해, 기타 인적 사고와 물적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⑥ 수급인은 물류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및 대인・대물사고에 대비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부속합의서의 불이행 또는 기타 불법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수급인이 서비스 제공 중에 도급인의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연착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선정한 손해사정인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화물의 가액은 도급인이 사전에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통지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물의 원가, 화물의 도착지 가격, 수급인이 가입한 책임보험 및 보증보험 등을 고려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⑤ 화물의 운송이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영토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조약에서 규정하는 수급인의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적용한다.
⑥ 수급인이 서비스 제공 중에 도급인의 화물의 포장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피해 화물의 재포장 비용을 기준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은 도급인의 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처리 할 수 있다. 단, 상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채권액을 명시한 정산서를 수급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⑧ 파손 화물 중 사용가능한 것은 도급인의 승인이 있을 경우 수급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 중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⑨ 수급인은 운송도중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재산피해 및 환경오염 등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단, 도급인의 지시로 인해 도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책임을 진다.
⑩ 수급인이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협의하여 수급인 이외의 제3자에게 해당 화물에 대한 서비스를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도급인의 추가 비용 및 손실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제9조(면책사항)

① 수급인은 도급인의 손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수급인이 화물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2. 전쟁, 폭동, 내란, 테러, 무력충돌
3. 천재지변, 전염병 유형 또는 불가항력
4. 동맹파업에 의한 도로봉쇄, 사업장 점거 및 협박 등
5. 재판상의 압류, 화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행위
6. 수급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가 수행한 화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기호 표시
7. 도급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의 행위
8. 그 밖에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정한 수급인의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를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사유를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기술상, 업무상 및 영업상의 비밀 및 제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 이후에도 본 계약에 이행되어야 할 의무가 남아 있을 경우 동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양도 금지)

① 수급인은 도급인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본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상 수급인의 권리와 의무를 인수한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며 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양도 이전에 본 계약에 의한 수급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하여 양도 후에 발생하는 수급인의 일체의 채무는 수급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책임진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기간 중 계약 내용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본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고,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변경에 대한 승낙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 또는 부속합의서의 내용 변경에 합의한 경우 변경 계약서 또는 새로운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기명날인함으로써 기존 계약 및 부속합의서 내용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13조(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수급인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그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도급인은 필요 시 수급인과 합의한 물류서비스의 수행기준을 수급인에게 제시하고, 수급인은 동 기준의 충족을 위하여 신의성실하게 수행
2. 도급인은 수급인의 물류서비스 평가를 분기마다 실시하며 수급인의 서비스 기준에 대한 수행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

제14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금융기관, 행정기관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부도, 파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청, 영업의 양도 또는 타회사 합병 등 영업상 중대한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②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본 계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급인의 대상 업무에 대한 수행기준 평가가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대상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③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제1항 및 2항 각 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가 해제권자・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⑤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도급인과 수급인이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투입하는 투자비용은 각각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본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시점까지 각 당사자의 투자비용 및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손해배상 및 법률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5조(부속합의서)

① 계약서 본문 외에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며, 본문에 명시된 사항 외에 내용의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이나 도급인과 수급인 양자 사이의 추가적인 약정은 부속합의서에 명시한다.

② 부속합의서의 내용은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도급인 과 수급인 쌍방 간 협의 하에 '부속합의서' 내용을 수정, 변경 및 보완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유효하며, 만료 3개월 전까지 쌍방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관할 및 준거법)

본 계약의 체결, 효력,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도급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

수급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